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해명자료 공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오전 10:51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입니다.

28일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한국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자료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해명에 대해 다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른바 양심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이슈에 대해 활동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까해서 공유합니다.



□해명자료

□
□
대변인실 02)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인권국인권정책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6 매

주책임자	김호철 과장	02) 2110-3673
담 당 자	홍관표 서기관	02) 2110-3674

제 목 :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대한 법무부 입장

- 한미 FTA 반대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등

- 법무부는 2008. 5. 28. 발표된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진상을 밝히고자 함
- 법무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국제 앰네스티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한미 FTA 반대시위

○ 보고서 내용

- "비정규직문제와 한미 FTA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7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KoA)의 공동 위원장인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불법으로"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11월에 석방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위를 벌인다고 사전에 신고를 했으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법무부 입장

-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집회 강행으로 구속된 것임**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나,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상대적 권리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 있음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시위대와 함께 2006. 7. ~ 2007. 6.까지 1년간 서울 등 전국 도심에서 10여 회의 대규모 한미FTA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

하고, 죽창 등으로 경찰 100여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공 시설인 시.도청에 난입하는(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법 폭력집회를 강행하여 구속되게 된 것임

□ 국가보안법의 적용 및 이시우 관련 사건

○ 보고서 내용

- "최소 8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

-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 12월 현재, 2006년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최소 8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기소되었다."

- "프리랜서인 이시우 기자는 국가보안법 4조, 7조, 8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이시우 기자는 주한 미군에 대해 기사를 쓴 후 군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보도는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한국정부와 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한 정보와 2002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KCBL)의 대표적인 회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법적인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인용한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입수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법무부 입장

-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른바 “양심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8명은 단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실정법 위반자일 뿐임

-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국가보안법 여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고, 법원도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검찰도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시우씨와 관련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 이는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해석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서에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참고로 보고서 내용과 달리 이시우씨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간첩)는 적용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얻어 입수한 정보에 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음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 보고서 내용

-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화재로 강제출국을 앞둔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들은 배상을 받았으나, 수감된 나머지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 법무부 입장

- 화재 당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것은 사실이나,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대다수(many)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

- 출입국사무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상자 중 배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1명이고,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4명에 불과함**

- 부상자로 배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출국을 요청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은 없음

-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체불은 고용주의 파산이나 소재불명으로 인한 것이고, 이들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임

□ 불법체류 외국인 송환

○ 보고서 내용

- "12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간부, Kajiman Khapung 위원장, Raju Kumar Gurung 부위원장, Abul Basher M Moniruzzaman 사무총장 등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으로 인해 11월에 구속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한다."

○ 법무부 입장

- 2007년 12월 적법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위 단체의 간부 3명이 본국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의 행사이었음**

- 강제퇴거된 위 3명은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었음

- 특히 그 중 한 사람은 1991년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다가 1998년 강제퇴거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2000년 타인명의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하여 검거 당시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던 상태였음

-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

□ 법무부는 이상과 같은 연례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와 아울러 국제엠네스티에 공식서한을 보내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